서울특별시의회 제332회 임시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 이용 승인안

# 검 토 보 고 서

2025. 9. 9.

교 육 위 원 회수 석 전 문 위 원

#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 이용 승인안 검 토 보 고

# 1. 회부경위

1. 의안번호 : 제3121호

2. 제 출 자 : 서울특별시교육감

3. 제출일자 : 2025. 8. 25.

4. 회부일자 : 2025. 8. 26.

## Ⅱ. 제안이유

○ 「초·중등교육법」개정(2025. 8. 14. 시행)으로 AIDT(디지털 교과서) 지위가 교과서에서 교육자료로 변경됨에 따라 2학기에 도 교육자료로 활용을 희망하는 학교를 지속 지원하기 위해 세출 예산 이용을 승인받고자 함

### Ⅲ. 주요내용

1. 기존 AIDT 예산은'(정책사업) 교육복지'에 편성하였으나, 교육 자료에 대한 예산 집행을 위해서는 정책사업간 예산을 상호 융통 하여 사용할 수 있는 세출예산 이용 필요

# ※ (정책사업) 교육복지 ⇒ (정책사업) 교수학습활동지원

# 2. 예산 이용을 통해 2025. 2학기에 AIDT를 교육자료로 활용하기를 희망하는 학교의 교육과정 안정적 운영 지원

# < 이용 내역 >

(단위: 천원)

예 산 과 목					예산액	이용증감	소계	
정책 사업	단위 사업	세부 사업	편성목	구분	(A)	(B)	(C=A+B)	
교육복지	교육복지 지원	교과사자원	운영비 (210)	감	101,176,353	△1,914,282	99,262,071	
교수학습 활동자원	학교정보화	ICT활용 교육자원	학교호계전출금 (620)	증	11,939,000	1,914,282	13,853,282	

#### Ⅴ. 검토 의견(수석전문위원 박광선)

#### 1. 제안경위 및 주요내용

- 동 승인안은 2028년 8월 25일 서울특별시교육감에 의해 의안번호 제 3121호로 제출되어 2028년 8월 26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 동 승인안은 「초·중등교육법」개정(2025.8.14.시행)으로 AIDT (이하 'AI 디지털교과서') 지위가 교과서에서 교육자료로 변경됨에 따라 AIDT 예산을 '(정책사업) 교육복지'에서 '(정책사업) 교수학습활동지원'으로 이용하여 AIDT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세출예산 이용을 승인받고자 합니다.

#### 2. 주요 검토의견

- 'AI 디지털교과서', '교육자료'로 변경
  - 교육부는 2023년 10월 24일에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시행 2023.10.24.][대통령령 제33829호, 2023.10.24., 일부개정])」의 정의, 검정 절차 등을 개정하여 AI 디지털교과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바 있습니다.
  - 이후 교육부는 「초중등 디지털 인프라 개선계획(안)」<sup>1)</sup>등을 마련하여 학교 현장에서 AI 디지털교과서 활용을 위한 디바이스 및 네트워크 구축 등 디지털 교육환경을 준비해 왔으며,

2024년 11월 29일에는 AI 디지털교과서의 검정 합격 결정을 공

<sup>1)</sup> 교육부(2024.5.). 초중등 디지털 인프라 개선계획(안).

고하여 2025년부터 일부 교과(수학·영어·정보)에 AI 디지털교과 서를 도입하기 위한 절차를 적극 추진하여 왔습니다.

- 그러나 이후 국회에서 AI 디지털교과서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정의하는 법률안이 발의되어 가결 되었고,<sup>2)</sup> 이에 교육부는 2025년 1월 22일 동 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를 하였으며, 최종적으로는 2025년 4월 17일에 동 법률안이 부결됨에 따라 AI 디지털교과서는 다시 '교과서'의 지위를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교육부의 AI 디지털교과서 정책에 따라 '2025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본예산'편성 시 초등학교 3·4학년 전체를 대상으로 AI 디지털교과서 예산을 '교과서지원'세부사업으로 총 185억 3백만원(운영비) 편성하였습니다.
- 그러나 이후 교육부는 AI 디지털교과서가 '교육자료'로 활용되는 법안이 발의되자 AI 디지털교과서를 초등학교 3·4학년 전체 대상 이 아니라 학교별로 자율적으로 선택하도록 하였고<sup>3)</sup>, 이에 서울시교 육청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서 동 예산을 △77억 4천만원 감액하 였습니다.
- 그리고 이후 서울시교육청은 AI 디지털교과서를 희망하는 학교를 대 상으로 초등학교 30억 1천 4백만원, 중학교 20억 6천 3백만원, 총 50억 7천 7백만원을 운영비로 편성하였고, 계약 형태는 교과별로 연간 또는 학기 단위로 학교별 계약이 이루어졌습니다.
- 그러나 이후 2025년 8월 4일에 AI 디지털교과서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초·중등교육법」4)이 다시 개정되면 서 AI 디지털교과서 지위가 교과서에서 교육자료로 최종 변경되게

<sup>2) [2206630]</sup>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회의 원안가결(2024.12.26.).

<sup>3)</sup> 교육부(2025.3.21.). 2025학년도 검·인정 AI 디지털교과서 자율선정 관련 수정 안내.

<sup>4) [2211647]</sup>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회의 수정가결(2025. 8.04.)

되었습니다.

#### ■ '예산의 이용'에 대한 타당성

- '예산의 이용'은 정책사업간에 예산을 상호 융통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원칙'에 의해 각 정책사업<sup>5)</sup>간에 이용은 원칙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으나, 예외적으로 "미리 예산으로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쳤을 경우에는 허용이 됩니다(「지방재정법」 제47조의26)).
- 이때 "미리 예산으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었을 때"의 의미는 예산총칙을 통해 미리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거나?), 지방자치단체장이 이용을 필요로 하는 과목·금액·이유 등을 명시한 서류를추가경정예산안이 아닌 별도의 안건8)으로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9).
- 따라서 동 승인안은 2025년도 예산 편성시에는 예측할 수 없었던

- 2. 기간제 근로자, 교육공무직 및 계약직교원 보수
- 3. 세금, 공과금, 배상금, 증인·감정인에 대한 실비변상금
- 4. 재해대책비
- 5. 반환금
- 6. 학교신설비
- 8) '지방재정제도 해설 사례집', 행정자치부, 한국지방재정공제회, 2015.12. 281쪽
- 9) 행정안전부(2024.7.). '202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395쪽 참조

<sup>5)</sup> 정책사업은 입법과목으로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승인은 원칙적으로 안건의 성질상 가 부만 결정할 수 있을 뿐 이를 수정하여 의결할 수 없음.

<sup>6) 「</sup>지방재정법」 제47조의2(예산의 이용·이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출예산에서 정한 각 정책사업 간에 서로 이용할 수 없다. 다만, 예산 집행에 필요하여 <u>미리 예산으로서</u> <u>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쳤을 때에는 이용할 수 있다</u>. ② 생략

<sup>7) 「</sup>지방재정법」제47조의2제1항의 단서 규정에 따라, 예산총칙편에 이용이 예상되는 예산은 상호 이용할 수 있도록 사전 승인을 얻어 집행토록 하는 것이 예산집행에 효율적이며, 의회 승인된 예산 편성목은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용, '2025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행정안전부, 2024.7. 159쪽 참조.

<sup>「2025</sup>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서」예산총칙

제8조 다음의 경비에 부족이 생겼을 때에는 「지방재정법」제47조의2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정책사업 간에 상호 이용할 수 있다.

<sup>1.</sup> 공무원의 보수

「초·중등교육법」개정에 따른 'AI 디지털교과서'의 교육자료로 의 지위 변화에 따라

2025년도 2학기에 AI 디지털교과서를 활용해야하는 학교 현장의 긴급성이 인정되며, 현재 예산 및 예산총칙에 편성되어 있지 않은 교육자료로서의 AI 디지털교과서의 예산을 '예산의 이용'을 통해 상호 융통하여 사용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할 것인바, 동 승인안은 별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표-1] 예산의 이용 현황

(정책사업) 교육복지	(단위사업) 교육복지 지원	(세부사업) 교과서지원		
Ţ	Û	Ţ		
(정책사업)	(다이시어) 하고저버링	(세부사업)		
교수학습활동지원	(단위사업) 학교정보화	ICT활용교육지원		

#### ■ 이용 규모의 적정성

○ 서울시교육청은 금번 이용 승인안에서 AI 디지털교과서를 '학기'로 계약한 학교는 제외하고 '연간'으로 계약한 학교 예산에 한해서만 2학기 예산(19억 1천 4백만원)을 이용하는 것으로 승인안을 제출하였습니다.

#### [표-2] 'AI 디지털교과서' 예산 편성 현황 (초·중학교)10)

(단위: 천원)

예 산	학	교   딕	본예산 (a)	제1회	1회 예산 F경 현액 남액	AIDT 계약금액			이용 신청액	제2회 추경 감액
쿠   쁩   분				구성 감액		연간	학기	전체	신청액	요청액 (예정)
안 80 田	초	공 립			10,763,657	1,671,409	1,130,949	2,802,358	1,914,282	3,772,392
		초 사 립	18,503,438	△7,739,781		94,256	117,471	211,727		

예 산 구	학 교	설 립 구 분	본예산	제1회 <sup>ᄎ경</sup>	예산 현액	AIDT 계약금액			이용 신청액	제2회 추경 감액
구 분	급	구 분	(a)	추경 감액	현액	연간	학기	전체	신청액	요청액 (예정)
	중	공 립				1,426183	-	1,426,183		
	ਠ	사 립				636,715	-	636,715		
	총	합계	18,503,438	△7,739781	10,763,657	3,828,563	1,248,420	5,076,983	1,914,282	3,772,392

- 이와 같은 이용 규모는 연간 단위로 종전 디지털 교과서를 계약한 학교와 업체 간의 행정의 신뢰성을 보장하고 갑작스런 제도 변화로 인해 학교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학생들의 교육과정의 혼란을 예 방한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 다만 개별 학교에서의 AI 디지털교과서 활용의 연속성을 고려한다면, 학기별로 계약한 학교에서도 2학기 수요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은 이와 관련한 수요 신청시 학기 단위로 계약한 과목에 대해서는 2학기 신청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서울시교육청은 동 사업의 예산을 이용한 이후 제2회 추가경 정예산안(예정)에서 △37억 7천 2백만원을 추가로 감액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바, 현재 동 사업의 예산은 계약 방식에 관계 없이 1학 기때 AI 디지털교과서를 활용한 학교의 수요를 모두 수용할 예산이 있는 상황으로 파악됩니다.

○ 따라서 서울시교육청은 학기 단위 계약한 학교에 대해서도 희망할 경우 2학기 AI 디지털 교육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하는 방안 또한 마련하여 학생들의 교육환경 변화로 인한 혼란을 방지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sup>10)</sup>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요구자료 1934번.

□ 이상으로「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 이용 승인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심사지원팀장 정진국(2180-8263) 입법조사관 이가영(2180-8270)